

## 動力資源部告示(第84-17號)

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정수 및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고시

「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收入金의 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고시」(동력자원부 고시 제84-9호)중 일부를 石油사업법시행령(이하 「영」이라 한다)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4년 6월 18일

動力資源部長官

제1호(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收入金의 정수금액)의 「나」항 (2)를 아래와 같이 하고 「라」항을 추가한다.

### (2) 프로판, 부탄

#### (가) 長期低價輸入分

1 메트릭톤당 260\$(비축기금+개발기금 : 160\$, 안정기금 : 100\$)

#### (나) 現物市場高價輸入分

1 메트릭톤당 260\$(비축기금+개발기금 : 160\$, 안정기금 : 100\$)에 현물시장 高價수입 CIF 가격과 장기 저가수입가격과의 차이의 60%를 비축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추가하되, 국내수급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에 대하여는 비축기금과 개발기금을 합한 금액 1 메트릭톤당 160\$을 징수하고 안정기금을 아래기준에 따라 산출 징수

① 기준 CIF 가격보다 低價導入分 : 1 메트릭톤당 100\$

② 기준 CIF 가격보다 高價導入分 : 1 메트릭톤당 100\$ - (실도입 CIF 가격 - 기준 CIF 가격) × 1.2035

○ 실도입 CIF 가격은 「LPG in World Markets」지에 발표된 선적된 달의 CIF 日本도착 최고가격을 상한선으로 하되 선적된 달의 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전월의 실적치를 준용하고 프로판과

부탄중 한 油種의 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우디 공시가격의 프로판, 부탄 가격차이를 기준으로 산출 적용

#### ○ 기준 CIF가격

- 精油社도입분 : 프로판 497, 620원/톤, 부탄 496, 910원/톤을 기금납부일의 환율로 환산한 달러화 금액에서 260\$/톤을 차감하여 이를 1.2035로 나눈 금액

#### - 正友에너지(주)도입분 :

프로판 248.09\$/톤  
부탄 263.13\$/톤

라. 실수요 석유업체자의 당해연도 計劃原油 처리량의 20%를 초과하여 국제현물 시장에서 原油를 구입시에 구입가격과 공식가격과의 차액을 안정기금에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원유구입계약승인을 받아 도입할 경우에는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업체자가 「가」항의 수입금액에 안정기금에 추가납부할 금액을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징수하되 계획원유처리량이 실적과 상이할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에 정산한다.

○ 선적물량 × [당해 항차 선적일의 1 배럴당 공식가격(FOB) - 1 배럴당 구입가격(FOB)] × 통관일이내의 납부일의 환율

#### 부 칙

이 告示는 1984년 6월 8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1호의 라항은 1984년 7월 1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.

## 動力資源部公告(第84-13號)

고압가스안전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 및 液化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시행규칙을改正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公告한다.

1984년 6월 30일

動力資源部長官

## 1. 法令題名
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
-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
- 液化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제정안

## 2. 改正·制定의 취지 및 주요내용

가스보급이 급진적으로拡大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안전 및 사업관리상의 문제를 현행의 안전 관리체제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므로 가스 보급화대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,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스관계법령을 전면改編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금번에 마련된 가스관계법시행 규칙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## 가. 가스供給施設 및 使用施設의 기준강화를 위하여

- 1) 저장탱크, 가스배관등 주요시설중埋沒되는 시설은 중간검사를 실시도록 함.
- 2)埋沒배관의材質은 현재 강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폴리에틸렌강관으로, 배물배관의 깊이는冬節期에 결빙과, 부동침해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0.6m는 1m로, 1m는 1.2m로 배관설치에 관한 제반 기준을 강화함.  
(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-5, 液化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3-4)

- 3) 테러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住宅商街地域에 설치된 10톤이상의 엘·피·지 저장탱크와 수송탱크로리에는 가스폭발장치를 설치토록 함. (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 규칙 제32조 별표 21,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3,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3 및 별표 4)

- 4) 가스사고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영업소, 지하상가 등 가스를 다량 사용하는 脆弱業所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가스가漏泄되는 경우 자동으로 경보,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도록 함(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별표 5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8).

나. 가스용품의 안전성 提高를 위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, 생산제품에 용도품질보증기간 사

용방법을明示도록 함(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, 제32조).

다. 민원인의便宜도모를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엘·피·지 차량검사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검사와類似한 것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도록一元化하였으며, 매년 1회씩 받는 운전사에 대한 교육을 최초 1회만 받도록 함(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).

라. 현행流通構造는容器의 소유·관리이원화, 충전시설의零細등으로 유통상의 안전확보가 어려울 뿐만아니라定量공급 여부로 인한 공급자와 사용자간의是非 및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충전소에서 자기소유로 용기를 확보하게 하며, 용량공급·계획배달제 실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(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3, 제12조, 제16조, 제17조, 제35조).

마. 가스사업자 및 가스대량사용자는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人命과財產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책임보험금액을 규정함(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,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).

3. 이 시행규칙에 대한意見이 있는團體 또는個人은 1984. 7. 19일까지 의견서를動力資源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動力資源部告示(第84-21號)

### 石油의需給安定을 위한 石油安定基金운용 관리요령

石油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이용合理화事業등의 추진을 위한石油安定基金 운용관리요령고시(동력자원부고시 제83-16호) 중 일부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4년 7월 9일

動力資源部長官

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금사용가능액 및 지원내용

가. 기금사용 가능액 : 588억원

나.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

(단위 : 억원)

| 事 業 名             | 細 部 内 容   | 支援金額      | 融資對象者                     | 融資取扱銀行 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. 에너지이용<br>合理化事業 | 가.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 및<br>시설의 생산 및 시설설치<br>나. 에너지절약형 新工程의<br>도입 등 | 371       | 에너지관리공단이<br>추천하는 實需要<br>者 | 產銀 및 企銀 |
| 2. 石炭產業의<br>育成    | 夏季貯炭資金 지원(83 용자액<br>상환금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7       | 大韓石炭公社                    | 產 銀     |
| 3. 電源開発事業<br>계    | 전원개발사업  | 90<br>588 | 韓國電力公社                    | 產 銀     |

주 : 1)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지원금액 371억원에는 84년 6월말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 既融資 추천  
한 224억원이 포함됨.

2) 石炭產業의 육성지원금액 127억원에는 84년 6월말 현재 未支援殘額 19억원이 포함됨.

3) 지원금액은 기금운용상의 사정에 따라 調整될 수 있음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- ② 動力資源部 告示 제84-8호(84. 4. 12)는  
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.

□ 石油開發動向 □

## 英國, 195개 海洋礦區 分양예정

英國의 에너지省은 제 9 차 광구분양에서 제  
공될 195개 海洋礦區를 발표했다. 入札申請  
마감일은 12월 17일로서 애초의 계획보다 조금  
이른 시기이다. 분양 결과 80개 정도의 礎區가  
허가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 이 새로  
운 광구분양은 石油會社들에게 西大西洋의 심  
해해역에 대한 入札申請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  
다. 이 해역에 대한 入札申請을 유도하기 위하여  
여 2개광구가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된 기간  
으로 Single License로 제공될 것이다.

深海海域의 광구는 Rockall 및 Faroes 海区  
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深度는 65 ft에

서 3,300ft까지 다양하다. 深海海域에 입찰신  
청을 하고 있는 会社들은 또한 30개 광구가 제  
공되고 있는 北海의 Mature Area에서의 광구  
할당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.  
이 30개 광구중 15개는 현금입찰이 이루어질  
것이다.

石油產業이 계속 가스探查에 관심을 기울이  
고 있음에 비추어 에너지성은 이 광구분양에 英  
국ガス公社의 Morecambe開発油田 근처에 있  
는 Mocambe海域의 5 개 광구는 물론 北海의  
남부 퇴적분지에 있는 26개 광구를 포함시키고  
있다.